

# 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클래스 신설	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 자산	환매 수수료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우리아이 3 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 G1 호(주식)	○	-	-	-	-	-	○	-
2	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-	-	-	-	-	-	-
3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○	-	-	-	-	-	-	-
4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지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-	-	-	○	○	10)
5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-	-	-	-	-	10)
6	미래에셋 3 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-	-	○	-	○	○	○	8), 9), 10)
7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8	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○	-	-	○	○	10)
9	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9), 10)
10	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1)	-	○	○	9), 10)
11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5 호(주식)	-	-	○	-	○	○	○	8), 9), 10)
12	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10)
13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-	-	○	-	-	○	○	10)
14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15	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16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10)
17	미래에셋스마트롱숏 30 증권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18	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10)
19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2)	-	○	○	8), 9), 10)
20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주 2)	-	-	-	-
21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8), 9), 10)
22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○	-	-	○	○	-
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-	-	0	0	10)
24	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주 1)	-	0	0	8), 9), 10)
25	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0	-	-	0	0	8), 9), 10)
26	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-재간접형)	-	-	0	주 3)	-	0	0	8), 9), 10)
27	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0	-	-	0	0	8), 9), 10)
28	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-	-	0	-	-	0	0	10)
29	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-	-	0	0	8), 9), 10)
30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-	-	0	-	-	0	0	8), 9), 10)
31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소독공제장기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0	-	-	0	0	10)
32	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-파생형)	-	-	0	-	0	0	0	10)
33	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0	-	-	0	0	8), 9), 10)
34	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-	-	0	-	-	0	0	8), 9), 10)
35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1 호(H)(주식)	-	-	0	주 4)	-	0	0	8), 9), 10)
36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1 호(UH)(주식)	-	-	0	주 4)	-	0	0	8), 9), 10)
37	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-	-	0	0	8), 9), 10)
38	미래에셋코스피 2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0	-	-	0	0	10)
39	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 7 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-	-	0	-	-	0	0	-
40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0	주 1)	-	0	0	10)
41	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0	주 3)	-	0	0	10)
42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주 1)	-	-	-	-
43	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0	0	-
44	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0	0	-
45	미래에셋개인솔로몬 MMF2 호(국공채)	-	-	-	-	-	0	0	10)
46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투자신탁 2 호(채권혼합)	-	-	-	-	-	0	0	-
47	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 ESG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0	0	10)
48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0	-	-
49	미래에셋글로벌주식 EMP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0	-	10)

50	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-	-	-	-	-	○	○	10)
51	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-	-	-	-	-	○	○	10)
52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(H)	-	-	-	-	-	○	○	10)
53	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○	○	10)
54	미래에셋변액보험미국나스닥 1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-	-	-	-	-	○	-	10)
55	미래에셋상생 ESG 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	-
56	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○	○	-
57	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-
58	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-
59	미래에셋지속가능 ESG 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-	-	-	○	○	10)
60	미래에셋클린테크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	10)
6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로로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-	○	○	-
62	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○	○	-
63	미래에셋합리적인 AI 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-	-	-	○	-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운용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9) 법 개정사항 반영
- 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5월 17일 (수)

## 4. 변경 내용:

- 1) 클래스 신설

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b>[아래 참조1]</b>
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제2부.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		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
[참조1]

-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
-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	0.80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40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-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구분	가입자격	판매보수(%)	선취	환매 수수료

			판매 수수료	
종류 C-P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	0.80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e	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40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	0.64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	0.32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## 2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-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김승범, 김윤정	김윤정

##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### 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
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신설> 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. ~2. <생략>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주2)
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b>환매조건부매수</b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주3)

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---	---	---

주4)
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 <생략> <b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b>

5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  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</u></p>

	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4. 종류C4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5. 종류C5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6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7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 C1, C2, C3, C4, C5, C-e, CG 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해당사항 없음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30%</u>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30%</u>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 <u>3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이상 90일미만: 이익금의30%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</u></p>

	<u>4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5. 종류직판F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6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 ] 3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30 일이상 90 일미만: 이익금의 30%</u> <u>[ C-e, 직판 F, S 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해당사항 없음</u>
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3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I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6. 종류S 수익증권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</u></p>

	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7. 종류C-P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 <u>8. 종류C-P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 A, A-e, C-P, C-Pe ] 없음</u> <u>[ C, C-e, I, S 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해당사항 없음</u>

6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< 투자비용 >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포함) 업데이트</u>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<u>총보수·비용(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 함)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</u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 항	-	<u>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</u>
제 5 부. 4. 가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 역	-	<u>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</u>

7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1호(주식)	2	2	<u>24.28</u>	<u>23.2</u>
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57</u>	<u>6.22</u>
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9.1</u>	<u>8.05</u>
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(국공채)	6	6	<u>0.05</u>	<u>0.1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22</u>	<u>8.42</u>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자투자회사2호(채권혼합)	4	4	<u>6.26</u>	<u>5.62</u>
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3	3	<u>11.47</u>	<u>11.45</u>
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39</u>	<u>7.1</u>
미래에셋글로벌사회책임ESG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<u>2</u>	<u>3</u>	-	<u>14.34</u>
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25</u>	<u>20.71</u>
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자투자신탁(H)(채권)	5	5	<u>3.41</u>	<u>4.27</u>

미래에셋달러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자신탁(UH)(채권)	4	4	<u>8.54</u>	<u>8.1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(주식)	2	2	<u>23.58</u>	<u>18.75</u>
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(주식)(H)	2	2	<u>17.59</u>	<u>18.24</u>
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(주식)(UH)	2	2	<u>16.83</u>	<u>16.74</u>
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	4	4	<u>9.56</u>	<u>9.41</u>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투자자신탁(주식혼합)(선택형)	2	2	<u>18.52</u>	<u>15.72</u>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93</u>	<u>17.74</u>
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97</u>	<u>18.52</u>
미래에셋솔로몬초단기공채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)	<u>6</u>	<u>5</u>	<u>0.45</u>	<u>0.83</u>
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5	5	<u>2.14</u>	<u>1.81</u>
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투자자신탁2호(채권혼합)	5	5	<u>2.08</u>	<u>1.88</u>
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04</u>	<u>21.72</u>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주식)	3	3	<u>14.32</u>	<u>12.04</u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5.88</u>	<u>17.97</u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5.67</u>	<u>18.05</u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17</u>	<u>17.61</u>
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27</u>	<u>20.73</u>
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)	5	5	<u>4.3</u>	<u>3.86</u>
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2	2	<u>21.56</u>	<u>19.88</u>
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2.07</u>	<u>12.57</u>
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투자자신탁G1호(주식)	2	2	<u>18.93</u>	<u>15.53</u>
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(채권혼합)(분배형)	4	4	<u>9.57</u>	<u>6.86</u>
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1</u>	<u>19.73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)	2	2	<u>22.44</u>	<u>22.09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)	3	3	<u>14.71</u>	<u>12.49</u>
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6.7</u>	<u>6.21</u>
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	2	2	<u>20.44</u>	<u>23.48</u>
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22</u>	<u>8.42</u>
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7</u>	<u>4.39</u>
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31</u>	<u>6.74</u>
미래에셋지속가능ESG채권증권투자자신탁(채권)	5	5	-	<u>3.4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자신탁1호(H)(주식)	2	2	<u>20.87</u>	<u>18.63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자신탁1호(UH)(주식)	2	2	<u>19.25</u>	<u>18.03</u>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38</u>	<u>5.72</u>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58</u>	<u>23.82</u>
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57</u>	<u>22</u>
미래에셋코친디아포커스7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)	<u>2</u>	<u>3</u>	<u>16.12</u>	<u>14.42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1</u>	<u>8.4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95</u>	<u>7.28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71</u>	<u>7.29</u>
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<u>8.28</u>	<u>6.45</u>

## 8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9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u>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

		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10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</u>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 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**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**

**1. 경력**

1) 성명: 김윤정 팀장

2) 주요 경력

(99년~03년) NH투자증권 리서치팀

(03년~07년) 동부증권 리서치팀

(07년~11년) 와이즈에프엔 금융솔루션팀

(11년~16년) 멀티에셋자산운용 리서치팀

(1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

**2. 운용 현황(2023.04.30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**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2015-03-03	267,164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6-09-09	222,866
미래에셋 OCIO 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6-09-23	46,868
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2016-03-21	37,603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2016-05-10	25,296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2016-03-14	21,437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2016-03-14	20,016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2016-03-14	18,139

**3. 운용성과(2023.04.30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**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글로벌 EMP 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3.46	8.07	1.48	32.53
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.04	3.36	2.63	89.48
미래에셋 OCIO 베스트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1.52	1.86	11.36	55.69
미래에셋하나 1Q 연금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	0.92	2.25	1.64	39.69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0.64	1.30	1.44	31.21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5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0.36	-0.47	0.42	31.70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0.58	0.00	2.10	22.32
미래에셋 QV 글로벌자산배분 70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0.45	-0.55	-0.15	40.47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0.73	1.46	1.30	31.79
미래에셋연금동행안정형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0.26	0.51	-0.42	0.27